

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(제20조 관련)

미끼의 종류	특정물질의 함량기준										
1. 가공미끼[어분(생선가루)·감자전분 등 동물성·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·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	가.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 1)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) 생배설물, 소변, 장 내용물, 수술 후 적출물(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) 3) 목재보호제(약품)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)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)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나.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물질명</th><th>허용기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소(As)</td><td>10mg/kg 이하</td></tr> <tr> <td>크로뮴(Cr)</td><td>100mg/kg 이하</td></tr> <tr> <td>카드뮴(Cd)</td><td>2.5mg/kg 이하</td></tr> <tr> <td>인(P)</td><td>2.7% 이하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물질명	허용기준	비소(As)	10mg/kg 이하	크로뮴(Cr)	100mg/kg 이하	카드뮴(Cd)	2.5mg/kg 이하	인(P)	2.7% 이하
물질명	허용기준										
비소(As)	10mg/kg 이하										
크로뮴(Cr)	100mg/kg 이하										
카드뮴(Cd)	2.5mg/kg 이하										
인(P)	2.7% 이하										
2. 인조미끼(납·철·세라믹 등 금속성·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)	인조미끼는 다음의 특정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물질명</th><th>용출 허용기준(mg/kg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(Pb)</td><td>90 이하</td></tr> <tr> <td>비소(As)</td><td>25 이하</td></tr> <tr> <td>크로뮴(Cr)</td><td>60 이하</td></tr> <tr> <td>카드뮴(Cd)</td><td>75 이하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물질명	용출 허용기준(mg/kg)	납(Pb)	90 이하	비소(As)	25 이하	크로뮴(Cr)	60 이하	카드뮴(Cd)	75 이하
물질명	용출 허용기준(mg/kg)										
납(Pb)	90 이하										
비소(As)	25 이하										
크로뮴(Cr)	60 이하										
카드뮴(Cd)	75 이하										